



란저우 쩡펑석유화학기술설비유한책임공사 VS 우시 편투필터 재료유한공사, 왕징리양, 우시 편투인터넷수출입무역유한공사 41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간수성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13)甘民三字终第5号
판결 일자	2013. 3. 26.	판결 결과	쌍방 상소 모두 기각(권리자 승)
원심원고(상소인)	쩡펑 석유화학기술설비유한책임공사		
원심피고(상소인)	1. 왕징리양, 2. 우시 편투필터재료유한공사, 3. 우시 편투인터넷수출입무역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제20조 최고인민법원 부정경쟁 민사사건 심리시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 제13조		
영업비밀	나선용접 메쉬튜브 기술비밀 및 경영비밀		
키워드 (Keyword)	권리침해(侵权), 상업비밀(商业秘密), 주관적 악의(主观恶意), 손해배상(赔偿损失), 이득액(利润), 사죄광고(赔礼道歉)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쩡펑 석유화학기술설비유한책임공사(이하 '쩡펑 공사')는 중국에서 메쉬튜브 생산 설비에 관한 상업비밀을 보유한 회사이다. 장기간의 경영활동을 통해 쩡펑 공사는 메쉬튜브 시리즈 제품의 주요 생산 공사로 고정적인 고객도 가지고 있었다. 피고 왕징리양은 원고의 기업에 근무하였고, 근무 당시 원고와 《상업비밀보호와 경업제한제도》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 왕징리양은 2009년 쩡펑 공사에서 퇴직 한 후 쩡펑 공사의 상업비밀을 이용하여 필터재료공사, 인터넷 공사에서 메쉬튜브 생산 기술지도 업무와 관련생산 설비 제작에 참여하였다.

쩡펑공사는, 왕징리양 및 필터재료공사, 인터넷공사에게 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쩡펑공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서, 쩡펑공사는 손해배상액이 작다는 이유로, 세 원심 피고는 침해를 부인하는 취지로 쌍방 상소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	원심 피고(상소인)
원고의 매쉬튜브 생산설비 기술정보와 경영 정보는 상업비밀을 구성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정보, 경영정보는 상업비밀을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 왕정리앙이 사직 후 원고의 허락 없이 상업비밀을 피고 우시 편투필터재료유한공사(이하 '필터재료공사')와 피고 우시 편투인터넷 수출입무역유한공사(이하 "인터넷공사")에 누설했다		피고 왕정리앙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 피고 필터재료공사와 피고 인터넷공사는 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
원심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다.		원심 판결은 법적절차, 증거수집에 오류가 있었다.

04 판결 요지

원심 원고 쟁평공사의 매쉬튜브 관련 기술비밀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조치를 취하였으며, 실용성과 경제성도 인정되므로, 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 장기적인 경영과정을 통해 맺은 공급수요 합작, 기술개선과 상업 명성이 누적된 점은 경영비밀에도 해당한다.

원심 피고 왕정리앙은 과거 원고 공사에서 매쉬튜브 생산설비와 제품 창작개발, 품질검사 업무를 책임졌고 매쉬튜브의 전문적 생산기술을 알고 있었다. 왕정리앙은 원고와의 경영 제한약정을 위반한 채 피고 공사에서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았으므로, 쟁평공사의 상업비밀을 타인에게 폭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터재료공사와 인터넷공사도 왕정리앙이 쟁평공사의 매쉬튜브 생산기술자로 쟁평공사의 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쉬튜브 기술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세 원심 피고들은 연대하여 쟁평공사에 상업비밀을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 인민폐 463,602 위엔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본 판결에서는, 전직제한 약정 관련 분쟁은 별도로 노동쟁의 중재 전치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 원고가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노동계약 및 경업제한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오직 위약행위와 권리침해 사이에 선택 청구만 가능할 뿐, 양 청구를 중복 심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판결에서는 명시적인 언급 없이, 양 청구를 중복 심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와 같은 입장이 중국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20조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계산법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① 권리자의 손해액, ② 손실액 계산이 어려울 경우, 침해자가 권리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으로 산정하며, 여기에는 권리자가 이와 같은 부정당경쟁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도 함께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사건에서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한국 법원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